

낙농정책연구소 낙농소식



조석진

낙농정책연구소 소장(영남대 명예교수)

EU의 한국에 대한 치즈수출 증가율 가장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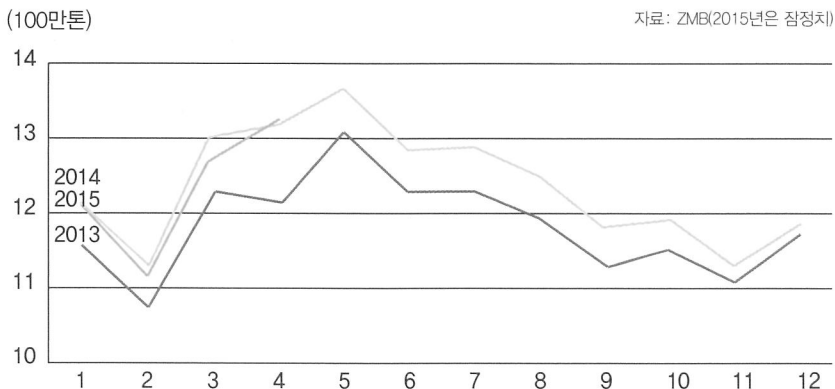
2015년 4월의 원유생산, 전년 동월 대비 0.7% 증가에 그쳐

독일의 유제품시장가격정보센터(ZMB)는 2015년 4월의 EU 28개국의 원유출하량이 전년 동기 대비 0.7%가 증가한 1,323만 톤으로, 4개월 만에 전년도 같은 달의 실적을 상회했다고 발표했다.

한편 2015년 1~4월의 누계치를 보면, 전년 동

기 대비 0.8%가 감소한 4,922만 톤으로,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

이는 2015년 3월 말 쿼터제가 폐지됨에 따라 4월 이후 원유생산확대가 예상되었으나 원유가격이 낮게 유지됨에 따라 두드러진 생산증가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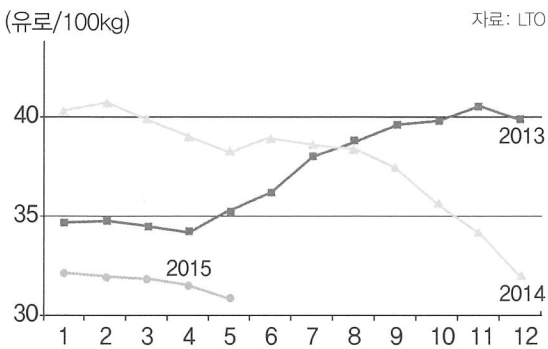


〈그림 1〉 EU의 원유생산량 추이

2015년 5월의 원유가격, 전년 동월 대비 19.7% 하락

화란의 「농업원예조직연합회(LTO)」에 의하면, 2015년 5월의 평균원유거래가격(EU 역내 주요 유업체 16개사)은 전월 대비 0.6유로가 하락하였으며, 전년 동월 대비 19.7%가 하락하여 100kg당 30.83유로(40,418원, 1유로=1,311원)로 나타났다.

이를 과거 3년간과 비교하면, 2014년 2월의 40.81유로를 정점으로, 국제유제품가격의 하락에 따라 하락추세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그림 2).



〈그림 2〉 원유거래가격 추이

러시아의 유제품 수입금지조치 1년간 연장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6월 24일 2014년 8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EU 등으로부터의 농축산물수입금지조치를 1년간 연장한다고 발표하였다. 금번 러시아의 이 같은 금수조치에 의해 2016년 8월까지

지 EU산 유제품에 대한 수입금지조치가 연장된다.

러시아는 EU로서는 최대 농축산물 수출국인 만큼 금번 수입금지조치가 1년간 연장됨에 따라 그에 따른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는 EU가 이미 러시아시장을 대체하기 위해 아시아, 북미, 중동 등의 새로운 수출시장 확보에 나서고 있는 만큼 그 영향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EU위원회에 따르면, 2015년 1~4월에 걸친 EU의 역외 지역에 대한 주요 유제품의 누적수출량은, 버터(전년 동기 대비 7.9% 증가), 탈지분유(동 16.6% 증가)의 수출은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지분유(동 10.4% 감소)와 러시아가 최대 수출국이었던 치즈(동 12.3% 감소) 수출은 모

〈표 1〉 EU의 수출시장별 수출량 추이(1~4월 누계)

수출시장	2013	2014	2015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미국	34,250	33,853	42,152	24.5
일본	13,308	12,503	20,127	61.0
스위스	16,934	17,601	17,762	0.9
한국	4,249	4,918	12,331	150.7
사우디아라비아	8,406	10,921	11,577	6.0
이집트	3,705	5,220	7,383	41.4
알제리아	6,368	6,498	7,186	10.6
호주	5,674	6,125	6,260	2.2
아랍연방	4,424	5,734	5,766	0.6
리비아	4,861	6,192	5,354	-13.5
러시아	83,219	76,259	1,669	-97.8
기타	71,955	68,219	85,334	25.1
합계	257,351	254,043	222,899	-12.3

자료: EU 위원회

출처: 畜産の情報(ALIC, 2015. 8)

번역: 낙농정책연구소 소장(영남대 명예교수) 조 석 진

두 감소를 나타냈다. 그런 가운데 치즈에 대해서는 새로운 수출시장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이 증가하

고 있으나 <표 1>에서와 같이 전체적으로는 상당한 감소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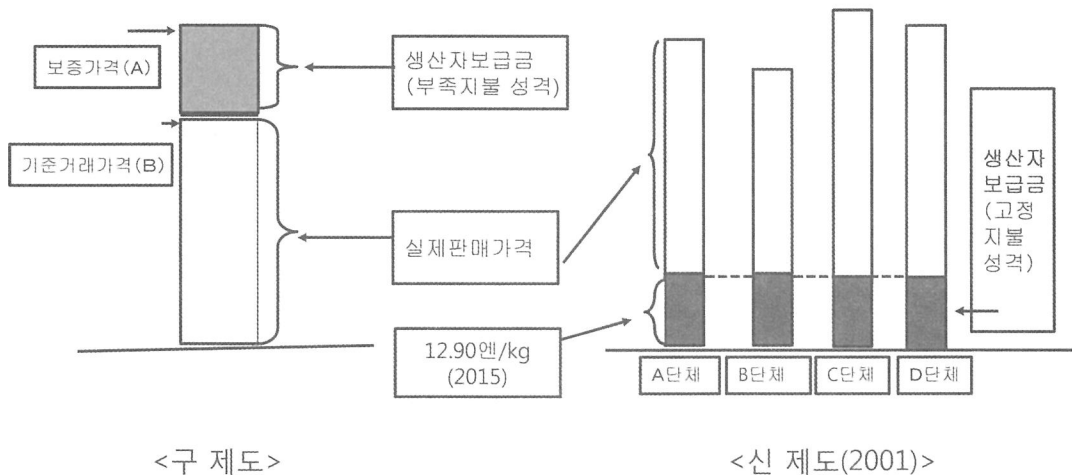
일본의 국산 유제품생산을 위한 제도

1965년에 도입된 일본의 「가공원료유 생산자보급제도」는 오늘날 일본의 국산유제품생산을 위한 중요한 제도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 그림과 같다.


즉, 1965년에 도입된 구제도는 가공원료유에 대한 보증가격과 기준거래가격(유업체지불가능가격)의 차액을 정부가 일정 한도 내에서 생산자보급금의 형태로 지불하는 제도로, 일종의 부족지불제도(Deficiency Payment Syste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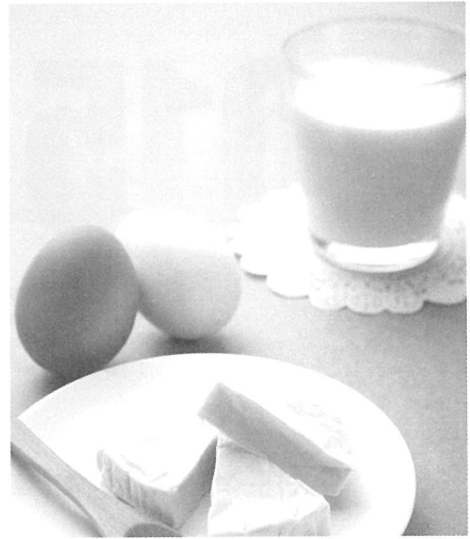
그러나 이 제도는 WTO(국제무역기구)체제 하에서 금지된 제도라는 이유로 2001년에 '신제도'로 바뀌었다. 그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각 생산자단체(A, B, C, D)가 유업체와의 유대협상을 통해 가공원료유를 각기 다른 가격에 판매했다라도 정부는 이들 생산자단체에 대해 일정액의 고정된 생산자보급금(고정지불금의 성격)만을 지급한다.

따라서 생산자단체는 유업체와의 거래교섭력을 높여 가능한 한 높은 가격에 판매할수록 유리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가장 거래교섭력이 높은 생산자단체(가격선도자: price leader)가 특정 연도의 거래계약을 성사시키면, 타 생산자단체는 그 가격과 약간의 차이를 두고 가격협상을 타결하는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다음 표는 2001년 이후 지정유제품(버터, 탈지분유 등)에 대한 가공원료유의 보급금단가와 한도수량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그동안 버터, 탈지분유 등을 중심으로 실시해 오던 제도를 2014년부터는 국산 치즈의 생산확대를 위해 치즈용 원료유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하고 있다. 



연도	보급금단가		교부대상수량	
	탈지분유·버터 등 원유	치즈용 원유	탈지분유·버터 등 원유	치즈용 원유
	엔/kg	엔/kg	천톤	천톤
2001	10.30	-	2,270	-
2002	11.00	-	2,200	-
2003	10.74	-	2,100	-
2004	10.52	-	2,100	-
2005	10.40	-	2,050	-
2006	10.40	-	2,030	-
2007	10.55	-	1,980	-
2008(4~6)	11.55	-	1,950	-
2008(7~09.3)	11.85	-	-	-
2009	11.85	-	1,950	-
2010	11.85	-	1,850	-
2011	11.95	-	1,850	-
2012	12.20	-	1,830	-
2013	12.55	-	1,810	-
2014	12.80	15.41	1,800	520
2015	12.90	15.53	1,780	520

출처: 농림수산성

번역 및 요약: 낙농정책연구소 소장(영남대 명예교수) 조 석 진